

# 2021 코로나19대응 자원봉사현장 운영지침Ⅳ

(7. 12. ~ 7. 23. 적용)

-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원봉사자 보호를 비롯한 자원봉사현장의 안전관리는 최우선적 과제임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된 관리지침)
- 이에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 운영과 관련한 안전관리수칙을 강화하고자 함

##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기본 방향

-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지역으로 차등화되어 있으므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침 적용
- 예방접종지원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하여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조치

###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 (수도권)

- (행사 연기 또는 취소) 다수 인원이 모이는 행사나 프로그램은 연기 또는 취소
- (방문 대면 활동 자제) 비대면 활동을 원칙으로 함. 대상자 방문활동의 경우 안부 전화활동으로 대체
- (사전 공지) 활동 취소 또는 연기시 자원봉사자에게 사전 안내
- (필수 활동) 필수불가결한 활동시 아래의 활동 지침 준수

## 2)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적용 지역 (비수도권)

- (행사 운영)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의거
- (대면 활동) 필요시 안전 수칙 준수
- (필수 활동) 필수불가결한 활동시 아래의 활동 지침 준수

### 2 자원봉사활동시 안전관리 지침

■ 자원봉사활동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대응 및 예방접종 지원활동 등을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이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함

- (자원봉사 활동 현장 방역 관리)
  - 공통 수칙 :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추가수칙 :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 비말행위(소리지르기, 노래 부르기 등)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
  - 자원봉사자 배치
    - 건강상태 이상자 참가 자제하도록 조치
    - 특히 수도권을 타 광역 시·도로의 원거리 이동 자제
    - 신청 접수시 해외여행 여부 및 건강 상태 확인 후 이상시 참가 제한
    - 사전 미신청자 참가 제한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집합 인원 준수
  - 휴식 제공
    - 휴게공간 및 휴식시간 확보, 휴식시에도 거리 유지 및 대화 자제
    - 음수 및 컵 등 1인용 지급 또는 개인 지참 유도

○ 자원봉사자 급식

- 식사는 개별 취식, 도시락 배부
- 집단 배식시 식사시간 시차 운영

○ 대면 활동

- 불필요한 접촉 삼가

- (준수사항 공지) :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아래의 안내문을 수정하여 활용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공지 예시〉

- ▶ 당분간 행사 등의 참가를 자제하시고, 긴급하지 않은 자원봉사활동은 해당 시설이나 기관과 유선으로 사전 협의한 후 활동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 ▶ 특히 감기증상 및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있는 분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자원봉사 활동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악수 등 신체적 접촉은 하지 말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활동 전후에는 손 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원봉사활동 전후에는 이동을 최소화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동 경로 또는 접촉한 사람들을 메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면접촉이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 도시락 전달 등 물품배부 시에는 직접 전달보다는 사전 양해를 구한 후, 문 앞에 놓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달해주시고 최대한 신체접촉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수요처 준수사항 공지 예시〉

- ▶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 행사, 교육 등은 중지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온라인 회의로 대체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기관 입구/ 자원봉사활동 현장에는 손 세정제 사용, 마스크 착용, 열 감지 또는 체온 측정, 악수 금지 등의 안내문을 부착하시고,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문 대장 (성명, 전화번호, 방문시간 등)을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건강 상태에 이상을 느끼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사전공지를 통해 활동 자제를 요청하시고, 참여시에는 마스크를 지참하도록 하며, 만일 감염시 자원봉사보험은 적용되지 않음을 사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현 보험약관상 코로나19는 해당하지 않음)
- ▶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활동시 자원봉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여러 명이 모인 경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악수나 신체적 접촉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의사항 안내 등 사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활동에 꼭 필요한 위생물품은 기관 차원에서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원봉사자 활동, 프로그램 전후 시설물 내 다중접촉점에 대한 소독 및 주기적인 환기를 하기 바랍니다.
- ▶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전후 이동을 최소화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동 경로 또는 접촉한 사람들을 메모하여 주시며, 자원봉사자의 활동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직원들의 대면 업무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바라며,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손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또는 직원 중 발열 또는 호흡기에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2021년 7월 1일 시행 예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전국 : 500명 미만 ▶ 수도권 : 250명 미만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 500명 이상 ▶ 수도권 : 250명 이상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 1,000명 이상 ▶ 수도권 : 500명 이상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 2,000명 이상 ▶ 수도권 :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내 미포함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내 미포함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는 행사 제한 인원내 미포함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는 집회 제한 인원내 미포함				

## 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m <sup>2</sup> 당 1명 (클럽, 나이트 8m <sup>2</sup> 당 1명)	시설면적 8m <sup>2</sup> 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10m <sup>2</sup> 당 1명/2~3단계)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X	24시 이후 운영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1~4단계)				
클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m <sup>2</sup> 당 1명	시설면적 10m <sup>2</sup> 당 1명(2~4단계)		
클라텍 무도장	운영시간 제한X	24시 이후 운영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홀덤편 홀덤편게임장	시설면적 6m <sup>2</sup> 당 1명	시설면적 8m <sup>2</sup> 당 1명(2~4단계)		
홀덤편 홀덤편게임장	운영시간 제한X	24시 이후 운영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3~4단계)	

\* 감염 발생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고,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

##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운영시간 제한X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X	24시 이후 운영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X	운영시간 제한X	22시 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실내 체육시설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X	운영시간 제한X	운영시간 제한X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22시 이후 운영제한
		<b>체육도장</b>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제한(권고) (겨루기, 대련, 시합 등)	<b>탁구</b>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b>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b>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b>실내풋살, 실내농구 등</b>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b>GX류</b>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b>체육도장</b>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b>피트니스</b>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X	운영시간 제한X	22시 이후 운영제한(3~4단계)	

• 감염 발생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고,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